

[]제조업등록 []원제업등록 []수입업등록
[]제조업변경등록 []원제업변경등록 []수입업변경등록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	
신청인	법인명(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)				
	대표자 성명	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 주소		
등록신청 내역	자체 검사책임자의 성명				
	판매관리인의 성명(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합니다)				
	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(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	
	실험실 소재지(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)				
	제조장 소재지(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의 소재지를 말하며, 해당 시설이 없으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)				
	보관창고 소재지				
	제조능력(제제형태별로 1일 8시간 기준 제조능력을 적습니다)				
변경등록 신청내역	구분	변경 전		변경 후	
본인의 이-메일,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[]예 []아니오					
「농약관리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·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농촌진흥청장 귀하					
첨부서류	등록 신청시	1. 사업계획서 1부 2.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(법인만 해당합니다) 3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.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.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합니다) 7. 별표 1 제2호가목2)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)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수수료: 「농약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름
		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: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			
	변경등록 신청시	1. 등록증 1부 2.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			

작성방법

- 1. 라에는 처리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2.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.
- 3. 실험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실험실의 주소 또는 위탁하고 있는 모든 실험실의 명칭 및 주소를 씁니다.
- 4. 제조장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제조장의 주소를 씁니다.
- 5. 보관창고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보관창고의 주소를 씁니다.
- 6.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씁니다.
 - 가. 자본금
 - 나.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
 - 다. 연간 생산계획량 및 판매방법
- 7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는 다음 양식으로 작성합니다.

시설 및 장비명		보유 대수	형 태	재 질	실 용 량		시설 능력 (1일 8시간 기준)		비고
주시설	부대시설				용 량	산 출 근 거	능 력	산 출 근 거	

처리절차

